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64

발의연월일: 2021. 3. 12.

발 의 자: 박상혁 · 임오경 · 진성준

김성주 · 민형배 · 박 정

강준현ㆍ허 영ㆍ어기구

이정문 • 윤후덕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방안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이는 공사 임직원의 투기성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 사 내부의 예방시스템이나 방안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공직을 이용 한 사익 추구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이에, 공사의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 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의 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임직원의 명의 대조를 통해 사 전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공사의 임직원이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보 상대상자가 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상 외 공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 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사 직원들의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부동산 취득의 제한 등) ① 공사의 임원·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실제 거주 목적 외의 사유로 주택, 토지 등의 부동 산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 득경위 및 취득목적 등을 포함하여 공사의 사장에게 사전에 신고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 범위, 사전 신고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의3(사업지구 토지 사전 전수조사 등) ① 공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사업지구 토지의 토지소유자와 공사의 임 원·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명의 대조를 통해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제26조의2를 위반한 미신고 토지가 확인될 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의 필요성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 범위, 조사 대상 · 절차 및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투기행위 보상배제) 공사의 임원·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제8조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대상자가 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한 보상 외 사업시행자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8조제1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5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 또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의 취득제한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26조의2(부동산 취득의 제한
	등) ① 공사의 임원·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실제
	거주 목적 외의 사유로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
	득경위 및 취득목적 등을 포함
	하여 공사의 사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
	<u>적 범위, 사전 신고 대상·절차</u>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26조의3(사업지구 토지 전수조
	사 등) ① 공사는 제8조에 따
	른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사업지구 토지의 토지소유자와
	공사의 임원·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명의 대조를
	통해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전

<신 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수조사를 실시하여 제26조의2를 위반한 미신고 토지가 확인될 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 범위, 조사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투기행위 보상배제) 공사의 임원・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8조에 따라 공

사의 임원·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8조에 따라 공 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대 상자가 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외 사업시행자가 제공해야 하 는 모든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다.

제28조(벌칙)	①
	<u>2</u>
<u>천만원</u>	
②	
- <u>7년</u>	· <u>7천만</u>
<u>원</u>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부동 산을 취득한 자 또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 는 추징한다.